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3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발의안)」 중 개인정보 보호기구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를 흠결하여 정부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률안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은 위원 면책특권 관련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악용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적□포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이혜훈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이혜훈 의원안'이라 한다)과 변재일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변재일 의원안'이라 한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정부법안'이라 한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 법안들의 내용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담당할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제17조, 유엔의 「전산화된 개인정보 파일 관련 가이드라인」(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국제적 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1980년 채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III. 판 단

1. 3개 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이유

가. 주요내용

표 1.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3개 법안 내용 비교

	이혜훈의원안	변재일의원안	정부안
추진 체계 (enforcement structure)	- 독립 감독기구 (independent commission) . 국무총리 소속 독립 감독기구, 사무처 수립 . 개인정보위원회	- 독립 감독기구 (independent commission) . 대통령소속 독립 감독기구, 사무처 수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부처 소속형 (part of government agency) .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국 .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독립성	- 독립형 (independent function) . 개인정보보호 기능만	- 독립형 (independent function) . 개인정보보호 기능만	- 결합형 (combined functions) . 소관부처 고유 업무 + 개인정보보호 업무
위원 구성	-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기구 (multi-member commission)	-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기구 (multi-member commission)	-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 (multi member committee)
감독기구/위원회 역할	-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 행정안전부 . 정책수립 및 집행 (policy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 심의 및 자문 (consultation and advice)
적용 범위	- 공공(public sector) + 민간 부분(private sector)	- 공공 + 민간 부분	- 공공 + 민간 부분
감독기구/위원회 세부 기능	-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도, 관행 조사 - 연구 및 개선 - 기준의 제정 및 고시 - 고충 처리(Ombudsmen) 및 피해 구제(remedies) 및 분쟁조정(dispute settlement)	- 중장기 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 및 시행 - 실태 및 관행 조사, 연구 및 개선 - 법령, 제도 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 - 기준의 제정 및 고시 - 사건의 조사(power of	- 행정안전부 . 정책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 정책, 제도, 그리고 법령의 개선 . 공공기관간의 의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조사 및 연구 - 기술개발의 지원 및 보급 - 교육 및 홍보 - 자율규제활동의 촉진 - 국제 기구 및 외국 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p>investigate) 및 고충 및 진정의 처리(handling of complai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 조정 및 구제 - 기술개발의 지원 및 보급 - 교육 및 홍보 - 국제기구와 외국 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해석 및 운영 .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 시정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 처리 결과의 공표
--	---	--	---

나. 제정이유

위 3개 법안 발의자들은 제정이유를 “현 상황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물론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존재이유와 기능

개인정보의 침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축적·처리·제3자 제공 내지 공유된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정보의 수

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상황을 외부의 비전문가인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된 기능은 크게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정책조언기능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 기능이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적 규정, 즉 개인정보처리 원칙을 구체화한 의무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유도하는 기능을 말한다.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예방적 기능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적인 민원해결기능이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말한다.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해결”하는 옴부즈맨의 전통적인 기능은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민원의 해결방식은 침해의 태양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해를 유도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위반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행정적 제재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에게 행

정적 제재(징계 또는 과태료부과 등)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셋째, 정책조언 기능이란 국가의 정보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말하는데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기능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러한 정책결정에 조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구조이다.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자문기능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도 존재하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혀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2005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회의개최가 총 6회에 그치는 등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임명하고 예산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분쟁조정에 국한되어 있다. 이외에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상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거래와 관련된 경우는 ‘소비자보호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체계나 독립성, 혹은 기능이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부문별로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보호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즉 많은 영역이 보호체계의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2003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보호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둘째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는 동시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주 집행기관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충돌하는 양 가치의 균형을 적정하게 이루면서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현재의 각 보호기구는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다. 가장 활발하게 보호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부문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기능은 주로 정보주체의 구제신청을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거나 민사배상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러 있다.

4. 통합□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한다고 할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감독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 부문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통합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동일하므로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은 양 부문에서 공통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모든 부문에서 통일되게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단일의 감독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효율성의 가치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워서 이 상반된 가치들을 단일의 특정기관이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기된다. 유엔은 1990년 총회에서 채택된 「전산화된 개인정보 파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리고 유럽연합은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 위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제8항 감독과 제재에서 “국가는 데이터 수집,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제28조(감독기구) 제1항은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 지침에 따라 제정한 국내법 규정의 자국내 집행을 감시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감독기구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한 독립성”은 기능적인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감독기구의 의사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독립성 관련 국제 기준과 필수요소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은 제출된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포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각 부문별 보호기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한정적인 점도 제출된 법률안들이 보호기구에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보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는 3개

법률안 모두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에 관하여 국제기구가 언급한 기준으로는 유엔총회가 1990년에 채택한 「전산화된 개인정보 파일 관련 가이드라인」 제8항 감독과 제재, EU가 1995년에 채택한 「사생활보호 지침」 제28조, 유럽이사회가 2001년에 채택한 「감독기구와 국경 간 정보이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협약의 추가의정서」, 제23차(2001년) 국제정보보호기구회의가 공표한 「정보보호기구 인정 요건」, 한EU FTA 협약(2009년) 제7.28조(규제당국)과 제7.43조(자료처리) 등이 있다. 이 국제기준들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최소한 필요한 요소

시행령 등에 위임 입법(delegated legislation)하는 것 보다는 직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설립한다.

기타 정치적, 행정적 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행정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 갑자기 해임되지 않도록 임기가 정해져 있다(보수 지급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명시된 이유(무능력, 근무 태만, 중과실 등)에 한해서만 해임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을 지닌다.

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속성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자원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사안에 관하여 의회□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몇 년간 지속되는 특정 지위(가령, 법원이나 심판소 위원)에 동시 임명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줄인다.

감독관(Commissioner)이 다른 직위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복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해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한다.

다. 기타 검토가 필요한 요소

어떠한 구조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비공식적인 정치적 또는 상업적 시도로부터 가장 잘 맞설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기구 구조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요소가 있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은 단독 감독관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 위원의 감독기구에 주어져야 하는가?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정보자유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ssioner)나 옴부즈맨 기구와 같은 타 기관들과 통합되어야 하는가?

개인정보보호기구는 더 포괄적인 인권 기관(예: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여야 하는가?

6. 각 안에 대한 검토

이하에서는 3개 법안의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하여 각 법률안의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 3개 법안 비교 검토

표 2.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3개 법안 비교 검토

	이혜훈의원안	변재일의원안	정부안
기구설립 법률근거	- 만족	- 만족	- 만족
독립조사권	- 만족	- 만족	- 불만족(심의기능만)
임기 보장	- 만족 . 3년, 1회 연임 가능	- 만족 . 3년, 1회 연임 가능	- 만족 (위원장, 위원) . 2년, 1회 연임가능
법에 면직조건 명시	- 만족	- 만족	- 일부 만족 대통령령에 위임(추정)
위원 면책특권	- 불만족	- 불만족	- 불만족
국회에 의한 임명	- 불만족 (대통령임명)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무총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일부 만족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이 임명) . 국회:3인, 대법원:3인, 대통령:3인,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 불만족 (국무총리임명) . 위원장 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
독립적인 행정 및 자원확보	- 불만족	- 불만족	- 불만족
국회에 정기적 보고 의무 및 권한	- 만족	- 만족	- 불만족

임기 종료후 일정기간 지속 가능 직위 공유	- 불만족	- 불만족	- 불만족
감독관 겸직금지	- 만족(추정)	- 만족(추정)	- 해당사항 없음 . 비상임 위원
위원구성	- 다수위원 감독기구	- 다수 위원 감독기구	- 다수위원(총괄, 분쟁조정기구)
타 기능 포함 여부	- 독립 기능	- 독립 기능	- 해당 사항 없음
타 조직 일부	- 별도 조직	- 별도 조직	- 행정부 소속형

나. 종합적 검토

3개 법안 중 이해훈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필수요소 5개 중 면책특권을 제외한 4개 요소는 충족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대부분의 경우 위원들의 행위가 직무관련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으나 기구의 독립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발의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 기능인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독립성 요건을 심각하게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원(위원장 포함)에 대한 국회에 의한 임명은 변재일 의원안만 일부 충족을 하였고 다른 두개의 안은 이를 흠결하고 있다. 또한 이해훈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기능상의 독립은 보장하고 있으나 조직 및 예산 상의 독립성(독립적인 행정 및 자원확보)은 흠결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기능상의 독립성 보장도 흠결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은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권한 보장도 흠결하고 있다. 직위 공유 규정은 유사업무기관 간 결정내용의 상충을 방지하고 외부압력에 대한 방어장치를 견고히 하기 위한 취지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고 일부 전문가들에게 과도하게 역할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원들에 대한 겸직금지규정도 정부안의 경우 비상임위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로 인해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기타 검토가 필요한 요소들은 충족 시 독립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불충족 시 그 반대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에서 검토한 다른 요소들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각국에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원구성요소를 보면 1인의 감독관 체제는 독임제 기관으로서 상황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호기구의 결정과 조치가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이해상충 집단 간의 이해조정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함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다수위원체제가 반드시 독임제 기관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다른 기능도 겸비해야 하는지 여부와 더 큰 인권기구의 산하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도 일의적으로 어떤 것이 독립성 확보에 더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안과 같이 개인정보보호기구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을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EU FTA 협약내용 중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 있으며 위에서 검토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요소는 대부분 유럽에서 정립된 것이어서 EU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요소들에 근거해서 판단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 상품의 EU수출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부안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를 흠결하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혜훈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면책특권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 예산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9. 12. 24.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 정본입니다.

2009. 1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안 진 현 (인)